

1. 개정이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를 정비하는 한편, FTA 활용 촉진을 위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싱가포르로 일시수출입하는 물품 등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대상 품목번호 정비(제3조제1항제1호·제2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된 기준으로 정비

나. 일시수출입 물품 관세 면제(제30조제4항)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일시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2022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다.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제10조제12항·제13항 신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단서, 제18조제1항 단서)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국내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원산지인증수출

자 인증신청 시 수출자가 제출해야하는 원산지소명서를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간소화

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소 사유 명확화(제11조제11항)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신청일 이후 서면·현지조사를 거부, 서류 보관의무 위반 등으로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인증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

마. 원산지증명서 관련규정 정비(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3항, 별표18, 별지 제10호, 제15호 서식)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발급 방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라오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등 원산지 증명서 관련 규정 현행화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0303390000호”를 각각 “제0303391000호, 제0303399000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제5호 중 “협정이 발효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을 “협정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상공회의소”를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0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관세청장은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하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⑬ 수출물품이 제12항에 따른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 국내제조확인서로서 제1항제4호의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생산자등”이라 한다)는”을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으로, “재료의”를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료를”을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재료 생산자등”을 각각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 한다.

제1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별지 제16호서식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제10조제12항에 따른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 확인서로서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제11항 중 “영 제7조제1호나목·라목·마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
2.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품목이 제10조제12항에 따른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로서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제30조제4항 중 “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을 “베트남·중미 공화국들 및 싱가포르와의 협정”으로 한다.

별표 18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제5호,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5호 중 “적재항”을 “하역항”으로, “선적이나 기적하는”을 “하선하거나 하기하는”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업체별 원산지인 증수출자 또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시수입출물품 관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p> <p>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가-1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납치류(영 별표 7 품목번호 제0303340000호, <u>제0303390000호</u> 및 제0303990000호의 납치류로 한정한다)</p> <p>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나-1에 따른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납치류(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340000호, <u>제0303390000호</u> 및 제0303990000호의 납치류로 한정한다), 명태(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6</p>	<p>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① ----- ----- ----- ----- ----- ----- -----</p> <p>1. ----- ----- ----- ----- ----- <u>제0303391000호</u>, <u>제0303399000호</u> ----- -----</p> <p>2. ----- ----- ----- ----- <u>제0303391000호</u>, <u>제0303399000호</u> --- ----- -----</p>

70000호, 제0303699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명태로 한정한다) 및 민어[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899091호 및 제0303990000호의 민어(미크로포고니아스 운둘라투스)로 한정한다]

3. ~ 5. (생 략)

② (생 략)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 제5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6. ~ 8. (생 략)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①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 8.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가. 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
가 규칙 5 및 법 제12조제1
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
자

나. 탁송화물의 총가격이 2천
미합중국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5. 페루와의 협정이 발효된 날
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수출
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서명한 것

6. ~ 13. (생략)

③ ~ ⑤ (생략)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② (생략)

③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
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
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상공회의소

5. ~ 11. (생략)

④ (생략)

⑤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

5. ----- 협정에 따라 -----

6. ~ 1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

5. ~ 11.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페루 통상본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⑥ ~ ⑧ (생략)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 ⑪ (생략)

<신 설>

<신 설>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관세청장은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하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⑬ 수출물품이 제12항에 따른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 국내제조확인서로서 제1항제4호의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
확인서)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
급하는 자(이하 “재료 생산자
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
당 재료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
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확인
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
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
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반복
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생산자등
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
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
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
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
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
하 “국내제조포괄확인서”라 한
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
료 생산자등으로부터 국내제조
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

제13조(국내제조확인서) ①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

----- 재료 또는 최
종물품의 -----

-----.

② -----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

----- 재료 또는 최종
물품 생산자등-----

-----.

③ -----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

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10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① ~

⑥ (생략)

⑦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⑧ ~ ⑰ (생략)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영 제7조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별지 제16호서식과
-----.

1. ~ 3. (현행과 같음)

⑧ ~ ⑰ (현행과 같음)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

-----.

다만,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제10조제12항에 따른 원산지간이확인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로서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

1. ~ 4. (생략)

② ~ ⑩ (생략)

⑪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 7조제1호나목·라목·마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 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⑫ ~ ⑮ (생략)

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
을 대신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⑪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

2.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
우

3.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
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
하거나 작성·발급한 경우

⑫ ~ ⑮ (현행과 같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개정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4쪽 중 제1쪽)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신청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작성방법 참조										
1. 신청구분	신규발급 [] 재발급() [] 정정발급() [] 소급발급(선적 후 발급) []											
2. 신청인	구분	생산자 [] 수출자 [] 관세사 [] 기타() []									사업자등록번호	
3. 원산지인증 수출자	비해당 [] 해당 [] (인증번호:)											
4. 적용자유 무역협정												
5. 수출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전자우편주소						
6. 생산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전자우편주소						
7. 수입자	상호					대표자						
	주소(국가)					전화번호						
8. 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신고번호(수리일)						본선인도가격(FOB USD)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	품목 번호 (HS No.)	품명·규격	금액(USD)	원산지결정기준							부가가 치비율 및 비 율계산	원산지 간이 확인 물품 여부
				완전 생산	세번 변경	부가 가치	결합 기준	특정 공정	역외 가공	기타		
/				[]	[]	[]	[]	[]	[]	[]	[]	[]
/				[]	[]	[]	[]	[]	[]	[]	[]	[]
9. 운송수단(선/편)명		선박 [] 항공기 [] 기타 [] /					10. 적재 항(출항일)					
11. 목적국/항구		/					12. 포장종류부호/개수					/
13. 총중량							14. 송품장 번호/발급일					/
15. 원산지 증명서 특례		제3국 송품장 [] 전 시 [] 연결 원산지증명서 []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첨부서류	<p><신규발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다. 우편물·택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계약 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합니다)4. 원산지소명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p>※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2항에 해당하는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은 원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p> <p><재발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재발급 신청사유서 <p><정정발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원산지증명서 원본2. 정정발급 신청사유서3. 정정사유 입증 서류	수수료 7,000원 (다만, 세관장 발급 시 면제)
------	--	---------------------------------------

작성 방법																							
항 목	작성 내용	작성례																					
1. 신청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또는 "소급발급" 중에 해당하는 것에 "√" 를 기재합니다. - 재발급, 정정발급 뒤 괄호 안에는 구(舊)신청번호를 기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발급의 경우 신규발급 [√] 재 발 급 [] 정정발급 [] 소급발급 [] 																					
2.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수출자", "관세사" 또는 "기타" 중 해당하는 것에 "√" 를 기재합니다. ○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생산자 [] 수출자 [√] 관세사 [] 기 타 [] ○ ○○물산(주) 홍○○ ○ 123-45-67890 																					
3. 원산지인중 수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해당" 또는 "해당" 중 해당하는 것에 "√" 를 기재합니다. ○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인중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합니다. ○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하는 경우 비해당 [] 해 당 [√] (인증번호:) 																					
4. 적용자유 무역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국가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아세안 FTA 																					
5. 수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주소: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를 기재합니다. ○ 전화/전자우편주소: 발급신청 부서(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신청부서 공용(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산(주) 홍○○ ○ 123-45-67890 ○ □□시 ○○구 △△대로 123 ○ 02-123-4567/○○○@abcd.com 																					
6. 생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주소: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를 기재합니다. ○ 전화/전자우편주소: 발급신청 부서(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신청부서 공용(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사(주) 김△△ ○ 234-56-78910 ○ □□시 ○○구 △△로 ○ 031-123-4567/○○○@bcde.com 																					
7. 수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상호를 기재합니다. ○ 대표자: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회사의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 주소: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주소를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Corporation ○ John △△ ○ 55 Newton Road #10 ○○ house ○ 65-1234-5678 																					
8. 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고번호(수리일):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번호 및 신고수리일 기재합니다. ○ 본선인도가격(FOB USD): 수출신고필증상의 총신고가격을 미화로 기재합니다. ○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 수출신고필증상의 란 번호를 기재합니다. (란 번호/총 란 수) ○ 품목번호(HS No.): 품목번호 6단위를 기재합니다. ○ 품명·규격: 수출신고필증상의 품명·규격을 기재합니다. ○ 금액(USD): 수출신고필증상의 해당 물품의 신고가격을 신고환율로 환산하여 미화로 기재합니다. ○ 원산지결정기준: 해당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0-10-16-12345678(2016/07/01) ○ USD 12,000 ○ 총 5란 중 3란 품목의 경우: 3 / 5 ○ 0304.31 ○ Tilapias(Oreochromis spp.) ○ USD 12,000 ○ 세번변경 및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colspan="7">원산지결정기준</th> </tr> <tr> <th>완전 생산</th> <th>세번 변경</th> <th>부가 가치</th> <th>결합 기준</th> <th>특정 공정</th> <th>역외 가공</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계산: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인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완전 생산	세번 변경	부가 가치	결합 기준	특정 공정	역외 가공	기타	[]	[]	[]	[√]	[]	[]	[]
원산지결정기준																							
완전 생산	세번 변경	부가 가치	결합 기준	특정 공정	역외 가공	기타																	
[]	[]	[]	[√]	[]	[]	[]																	
※ 수출품목의 개수가 총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품목번호(HS No.), 품명, 규격 및 금액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부가가치 50% 이상 기준인 경우 - 55% (USD10,000- USD4,500)/USD10,000 ○ 원산지증명 간이확인 대상 물품인 경우 "√" 를 기재 																					
9. 운송수단 /선(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중 해당하는 것에 "√" 를 기재합니다. ○ 선명 또는 편명을 기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 항공기 [] 기타 [] ○ KE 123 																					
10. 적재항 (출항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물품의 적재항(또는 적재예정항), 출항일(또는 출항예정일)을 기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2016/07/01) 																					
11. 목적국 /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물품의 최종 목적국 및 항구를 기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하노이항 																					
12. 포장종류 부호/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물품의 포장종류 부호와 포장개수를 기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S/1,000 																					
13. 총중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물품의 총중량을 기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Kg 																					
14. 송품장번호 /발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품장 번호와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C123456/2016.07.01 																					
15. 원산지증명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국 송품장", "전시", "연결 원산지증명서" 또는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중 해당하는 것에 "√" 를 기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국 송품장 [√] ○ 전 시 [] ○ 연결 원산지증명서 [] ○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 																					

※ 처리기간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이내 2. 위 제1호 외의 경우: 3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이내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개정 >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2쪽 중 제1쪽)

1. 발급번호(Reference No.) :

2. 공급하는 자 (Supplier)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팩스번호(Fax)
	주소(Address)	인증수출자 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전자우편주소(E-mail)	

3. 공급받는 자 (Supplied to)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팩스번호(Fax)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s)

4. 연번 (S/N)	5. 자유무역 협정명칭 (Name of FTA)	6. 품목번호 (HS No.)	7. 품명·규격 [Description ·Specification of Good(s)]	8. 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9. 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10.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11. 원산지 (Country of Origin)	12. 원산지 포괄 확인기간 (년월일~ 년월일 [Blanket period (YYYY/MM/DD ~ YYYY/MM/DD)]	13. 원산지 간이 확인 물품 여부
						충족 (Y)	미충족 (N)			
						[]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origin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of 「Enforcement Rules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작 성 자(Declarer) : (서명 또는 인)(Signature)
 직 위(Title) :
 상호 및 주소(Company Name/Address) :
 작 성 일(Date) : 년 월 일 (YYYY/MM/DD)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작성 방법																																	
항 목	작성 내용																																
1. 발급번호	○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기재합니다.																																
2. 공급하는 자	○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 공급하는 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합니다.																																
3. 공급받는 자	○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4. 연번	○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기재합니다.																																
5. 자유무역협정명칭	○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등																																
6. 품목번호(HS No.)	○ 공급물품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																																
7. 품명·규격	○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기재합니다.																																
8. 수량 및 단위	○ 원산지포괄확인이 아닌 경우 공급물품의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합니다.																																
9. 원산지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원산지결정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가. 완전생산 물품</td> <td>- WO</td> </tr> <tr> <td>나. 세번변경기준</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2단위 세번변경기준</td> <td>- CC</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4단위 세번변경기준</td> <td>- CTH</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6단위 세번변경기준</td> <td>- CTSH</td> </tr> <tr> <td>다. 부가가치기준</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td> <td>- B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td> <td>- BU</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td> <td>- MC</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td> <td>- NC</td> </tr> <tr> <td>라. 결합기준</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td> <td>-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CC(CTH또는CTSH) + SP - BD(BU, MC 또는 NC) + SP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SP</td> </tr> <tr> <td>마. 특정공정기준</td> <td>- SP</td> </tr> <tr> <td>바.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td> <td>- OP</td> </tr> <tr> <td>사. 기타기준</td> <td>- Other</td> </tr> </tbody> </table>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CC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CTH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BD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BU	-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MC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NC	라.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CC(CTH또는CTSH) + SP - BD(BU, MC 또는 NC) + SP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SP	마. 특정공정기준	- SP	바.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사. 기타기준	- Other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CC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CTH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BD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BU																																
-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MC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NC																																
라.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CC(CTH또는CTSH) + SP - BD(BU, MC 또는 NC) + SP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SP																																
마. 특정공정기준	- SP																																
바.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사. 기타기준	- Other																																
10.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여부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기재합니다. 예)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충족에 "√" 를 기재합니다.																																
11. 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으로 기재합니다.																																
12. 원산지포괄확인기간	○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기재합니다. 예) 2016.07.01 - 2018.06.30 ※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13. 원산지증명 간이발급 대상 물품 여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2항에 해당하는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 대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한 물품 인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예) 원산지증명 간이확인 대상 물품에 해당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 를 기재합니다.																																

국내제조(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Inward Processing)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 제1쪽)

1. 발급번호(Reference No.) :		
2.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 (Blanket period)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From YYYY/ MM/ DD to	YYYY/ MM/ DD)
3. 공급하는 자 (Supplier)	상호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팩스번호(Fax)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4. 공급받는 자 (Supplied to)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팩스번호(Fax)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5. 공급물품 명세(Good(s) Statements)						
연번 (S/N)	품목번호 (HS No.)	품명·규격 (Description· Specification of Good(s))	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가격 (Value)	주요 생산과정 (Production Process)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 여부
						[]
						[]

6. 재료 명세(Material Statements)							
공급물품 연번 (S/N in Entry 5)	재료연번 (S/N)	품목번호 (HS No.)	원산지재료 해당여부 (Originating Material(Y/N))	품명·규격 (Description· Specification of Good(s))	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가격 (Value)	비고 (Remarks)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inward processing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1 of 「Enforcement Rules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

작 성 자(Declarer) : (서명 또는 인)(Signature)
 직 위(Title) :
 상호 및 주소(Company Name/Address) :
 작 성 일(Date) : 년 월 일 (YYYY/MM/DD)

작성 방법	
항 목	작성 내용
1.발급번호	○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기재합니다.
2.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	○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기재합니다. ※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수 국내제조확인서로 봅니다.
3.공급하는 자	○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 단, 이 서류의 작성자가 최종 수출물품의 생산자로서, 공급하는 물품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2항에 따른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4.공급받는 자	○ 국내제조(포괄)확인서상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 단, 이 서류의 작성자가 최종 수출물품의 생산자로서, 공급하는 물품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2항에 따른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5.공급물품명세	○ 공급물품의 연번, 품목번호(HS No.) 6단위, 품명·규격, 수량 및 단위, 가격(원화로 기재) 및 주요 생산공정(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인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예) 원산지증명 간이확인 대상 물품에 해당하여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 를 기재합니다.
6.재료명세	○ 5번 항목에 기재된 공급물품별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재료에 대하여 연번, 품목번호(HS No.) 6단위, 품명·규격, 수량 및 단위, 가격(원화로 기재) 등을 기재합니다. ○ 단, 공급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중 원산지의 확인에 필요한 재료의 내역만을 기재합니다. (필요시 원산지재료 내역만을 기재하거나 비원산지재료 내역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재료에 해당할 경우 '원산지재료 해당여부' 란에 'Y', 아니면 'N' 으로 기재합니다. ○ 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2항에 따른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하거나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품목번호, 원산지재료 해당여부, 수량 및 단위, 가격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